# 심사보고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2 2018. 9. 19. (수) 교 육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18년 8월 28일

다. 회부일자: 2018년 8월 31일

라. 상정일자: 2018년 9월 6일

(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김덕환)

### 가. 제안이유

학교신설 등 교육행정변화에 따른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하고, 분야별 외부 전문가 도입으로 교육정책 및 역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O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개정(개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총수: 3,175명 → 3,235명 (60명 증원)
- O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개정(개정안 제3조제1항, 별표1)
  - 일반직: 99.8% 이상 → 99.7% 이상
  - 별정직·정무직: 0.2% 이내 → 0.3% 이내
- O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개정안 제4조, 별표3)
  - 일반직: 2,908명 → 2,944명 (5급 이하 36명 증원)
  - 교육전문직원: 251명 → 271명 (5급상당 이하 20명 증원)
  - 별정직: 3명 → 7명 (4급 상당 1명, 5급 상당 이하 3명 증원)

# 3. 검토보고 요지

### (수석전문위원 이충환)

- 본 조례 개정안은 학교신설 및 행정직원 단독배치 학교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한 일반직의 증원과 유아교육, SW교육 및 직업교육 활성화와 기관별 인력확충을 위한 교육전문직의 증원, 교육 분야별 외부 전문가 임용을 위한 별정직 정원을 증원하여,
- O 충청북도교육청의 원활한 교육정책 수행을 위한 조례개정 안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별정직 공무원의 과다한 증원에 대한 외부의 반대의견을 적극 수용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도 교육부의 2018년도 총액인건비범위에서 운용하는 적정한 정원책정이라 판단됨.

- 다만, 학생수 감소, 교육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비대화 보다는 외부기관 활용이 가능한 사업은 사무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기관의 행정사무 간소화를 도모하는 정원 관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 5. 토 론 요 지: "생략"
-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O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175명"을 "3,23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2, 917명"을 "2,957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251명"을 "271명"으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1】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7% 이상	0.3% 이내

비고: 일반직에는 전문경력관 및 연구직의 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2]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전문경력관	
비 율	1.5% 이내	8% 이내	31% 이내	40% 이내	19% 이상	0.5% 이내	

###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	100%

### 3. 교육전문직원

구 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 율	30% 이내	70% 이상

###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이하
비 율	15% 이내	30% 이내	45% 이내	10% 이상

【별표3】 <u>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u>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235			-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944		•	-		
3급	5		5			
4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2,907		-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		
연구사 소계	12		-	-		
교육전문직원 계	271		•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4		23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37		-	-		
별정직 계	7		•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6					

# 신구조문 대비표

# 제2조(정원의 총수) 충청북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175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행

혀

- 1. (생 략)
-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 2,917명 (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 한다)
- 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에 두는 교육전문직원 : 251명

####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8% 이상	0.2% 이내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이하
비 율	<u>70% 이내</u>	<u>30% 이상</u>

#### [별표 3]

제2조(정원의 총수)	
<u>3,235</u> 1	<u>명</u>
 1. (현행과 같음) 2	
:	<u>2,957명</u>

개 정 안

####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 271명

구 분	일반직	별정직·정무직
비 율	99.7% 이상	0.3% 이내

####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급 상당 이하
ı	비 율	15% 이내	30% 이내	45% 이내	10% 이상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작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공립 각급학교
총계	3,175		-	•		총계	3,235			-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교육감	1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2,908		-	-		일반직 계	2,944			-	
3급	5		5			3급	5		5		
4급	19	1	17	1		4급	19	1	17	1	
5급 이하 소계	2,871		-			5급 이하 소계	2,907	-			
전문경력관 소계	13		-	-		전문경력관 소계	13	-			
연구직 계	12		-	•		연구직 계	12	-			
연구사 소계	12		-	•		연구사 소계	12	-			
교육전문직원 계	251		-	-		교육전문직원 계	<u>271</u>		-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4		23	11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34		23	11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217		-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u>237</u>			-	
별정직 계	3		-		별정직 계	<u>7</u>	-				
5급 상당 이하 소계	3			-		4급 상당	1		1		
						5급 상당 이하 소계	<u>6</u>				

#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2.27.] [대통령령 제28679호, 2018. 2.27., 일부개정]

제15조(정원의 관리)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확인 결과를 기관별·기구별·종류별· 직렬별·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② 제13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 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 기관별로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1. 5급 이하 직급별 정원
- 2.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
- 3. 일반직 5급 이하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직되는 직위에 보하는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학교신설 등 교육행정변화에 따른 교육행정수요 반영
- 분야별 외부 전문가 도입으로 교육정책 및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
- 관련: 교육부 지방교육자치과-1184(2018. 2.27.)

### 2. 비용 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60명(일반직 36명, 별정직 4명, 교육전문직원 20명) 인건비

### 3. 관련조문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0조

제20조(정원의 규정) ① 시·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도의회 사무처 정원
-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② ~ ④ 생략

###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18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산정 단가 적용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연간 인건비 추계			연도별 인건비 추계				
کِ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1. 정규직인건비			5,019,380	5,195,059	5,376,887	5,565,080	21,156,406
가. 일반직	69,261,000원×36명=	2,493,396	2,493,396	2,580,665	2,670,989	2,764,474	10,509,524
나. 별정직	69,261,000원× 4명=	277,044	277,044	286,741	296,777	307,165	1,167,727
다. 교육전문직원	원 112,447,000원×20명=	2,248,940	2,248,940	2,327,653	2,409,121	2,493,441	9,479,155

※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의 인상률 적용

다. 재워조달방안: 보통교부금

# 5. 연도별 비용추계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계	
세입		5,019,380	5,195,059	5,376,887	5,565,080	21,156,406	
보통교부금		5,019,380	5,195,059	5,376,887	5,565,080	21,156,406	
세출		5,019,380	5,195,059	5,376,887	5,565,080	21,156,406	
정규직인건비		5,019,380	5,195,059	5,376,887	5,565,080	21,156,406	
재원조달							
의존 재원	소계	5,019,380	5,195,059	5,376,887	5,565,080	21,156,406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5,019,380	5,195,059	5,376,887	5,565,080	21,156,406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기타(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입법예고 결과 검토 일견

поот		입법예고에 따른 일견서	74 E 01 74	
민원인	관련조항	의견 내 <del>용</del> 및 그 이유	찬반여부	검 토 인 견
충청북도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増五1, 増五2의4, 増五3	○ 신규사업 수요에 따라 전문직, 별정직 등을 늘리는 것보다는 역량을 갖춘 기존 지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더 많은 직무훈련을 통해 충북교육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임 ○ 현재 공약 및 단체협약의 미완료 사업인 1인 행정실장(단독배치교) 해소, 병설 유치원 3학급 이상 추가 배치, 행목 씨앗학교 지방공무원 추가 배치, 행정실무사(교육공무직원) 배치교 지방 공무원 감원 인원 충원, 인사업무 담당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업무 과중부터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전문직, 별정직 등의 과다한 증원을 줄이고 지방공무원 정원 추가 증원을 요구함	"반대"	"일부 수용 검토"  ② (일반직, 교육전문직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학교신설 등교육행정변화에 따른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하여 필요 인력 적정배치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증원하는 것임 ③ (별정직) 책정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1.0% 내외로 운영하는 타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의균형을 고려하고, 탄력적 정원운용을 위해 조례상 정원책정기준을 0.5% 이내로 정한 것이며,인력배치는 실제 필요인원 5명내외로 운영할계획이므로 이를감안하여 별정직 증원을 최소화하고,일반직 추가 증원 요구사항을 반영할계획임
곽○○	충청북도 교육청 공고 2018-304	<ul> <li>○ 학교신설 등에 따른 교육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교육정책 및 역점사업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이해와 공감대 제고를 위한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별정직 공무원을 0.5%이내로 증원하는 것은 타시도와 비교해적정하다고 판단됨</li> <li>○ 지방공무원의 총수 및 단위기관별, 직급별정원을 개정함에 있어서 일반직30명, 전문직20명, 별정직10명을 증원함이 타당하다고판단됨</li> <li>○ 다만, 이명박 정부에서 획일적으로 5%감축된 정원을 회복하여 단위학교의정원을 보강하고 단위학교 지원을 위한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필요하다고 판단됨</li> </ul>	"찬성"	<ul><li>○ 단위학교와 교육수요자에 대한 현장지원 인력의 적절한 분배로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li></ul>